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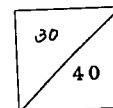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3	1	1994. 1. 6.	홍재김영호

의안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외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제59조

제외적지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에 대한 금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는 장기주택
마련자족의 예금지급준비율을 결정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외함



< 참고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57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한국은행법 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안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2.

(생 략)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법	개	비
령	정 (안)	고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예금 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예금 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주택부금에 대하여는 3.0%	1.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주택부금에 대하여는 3.0%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3.0%의 지준율 적용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제5조 (생 략)	제3조~제5조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1994.1.10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명시